

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
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제1항, 별표 3)
- 나. 용어 정비(안 제8조~제11조, 제15조, 제16조,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,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의 종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인 만큼 관행적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,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업 운영 및 기금 정산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교육 및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.